

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(2025년 경인지방우정청)

※ 적용시기 : 2025. 1. 13. 입찰 공고분 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격)	[일반관리비]		[이윤]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노+경+일) x 율	(직접공사비) x 율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	전문- 전기·통신- 소방·기타		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6	12.6	5.2	5.2	5억 미만	6.0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
	7~12개월 (365일)	12.6	12.6	5.2	5.2									5억 미만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
	13~36개월 (1095일)	12.8	12.8	5.6	5.6													안전관리비 대상액 ^{주)}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3	12.3	5.5	5.5	30억 - 50억 미만	5.0	5.5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
	7~12개월 (365일)	12.4	12.4	5.5	5.5									5억 ~ 50억 미만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
	13~36개월 (1095일)	12.5	12.5	5.8	5.8													안전관리비 대상액 ^{주)}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6	11.6	5.5	5.5	50억 - 100억 미만	5.5	5.0	12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7	11.7	5.5	5.5									50억 ~ 500억 미만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
	13~36개월 (1095일)	11.8	11.8	5.9	5.9													안전관리비 대상액 ^{주)}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1.3	11.3	5.8	5.8	300억 - 1000억 미만	5.0	4.5	10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4	11.4	5.8	5.8									500억 이상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
	13~36개월 (1095일)	11.5	11.5	6.2	6.2													안전관리비 대상액 ^{주)}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과과, 도서인쇄비 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 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		1000억 이상		4.5		9.0		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	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설치 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 -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,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									
[산재보험료]		(노) x 3.56		[환경보전비]		(직접공사비) x 율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설치 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 -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,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4-1호(2024. 1. 5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구분		요율		공사규모(추정가격)				요율									
[고용보험료]		(노) x 율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	0.9		50억 미만				0.081									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	요율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0.4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		0.080									
[1등급] 1200억 이상		1.57		지하철		0.5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		0.075									
[2등급] 800억 ~ 1200억 미만		1.30		철도		1.5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		0.071									
[3등급] 520억 ~ 800억 미만		1.13	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0.5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건축)				0.068									
[4등급] 340억 ~ 520억 미만		1.06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		1.8		터키 대안공사				0.084									
[5등급] 210억 ~ 340억 미만		1.03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		0.8	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 ※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											
[6등급] 130억 ~ 210억 미만		1.02		담		1.1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													
[7등급] 고시금액 ~ 130억 미만		1.01		택지개발		0.6		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			수수료									
7등급 미만				기타 토목(하천 등)		0.8		70억 미만				[직공비]x0.0141%]x공기(년)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 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지자적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/산자부 고시 제2023-131호, 2023.7.1.)				주택(재개발, 재건축)		0.7		70억 이상~120억미만				[1백만원+(직공비-75억)x0.0102%]x공기(년)									
[건강보험료]		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	[연금보험료]				120억 이상~250억미만				[1.5백만원+(직공비-130억)x0.0077%]x공기(년)									
(직노) x 3.545		(건강보험료) x 12.95		(직노) x 4.5				250억 이상~500억미만				[2.4백만원+(직공비-250억)x0.0063%]x공기(년)								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		500억 이상				[4백만원+(직공비-500억)x0.0050%]x공기(년)									
[퇴직공제부금비]		(직노) x 2.3		.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요양방지시설 설치, 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				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				□ 수익계약 1차 낙찰률, ()은 2000.7.31이전 「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」 제9조 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 - 추정가격10억 ~ 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 - 추정가격50억 ~ 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									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) 요율 적용				.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 훈련비 등 설계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국가유산 수리공사								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을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※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국가유산 수리공사																	

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